

■ 법률 칼럼

### 최근 이민 소식

#### ■ 학생 신분 변경 시 급행 수속 시작

6월12일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F-1/F-2)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M-1/M-2 그리고 J-1/J-2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도 급행 수속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분 변경이 접수되어 심사가 계류 중인 케이스는 6월13일부터 급행 처리 수속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29일부터는 처음 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급행 처리 요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문 날인이 마쳐져 있어야 급행 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재 케이스가 심사 중이고 지문 날인이 끝난 경우는 급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문을 날인 못한 계류 중 케이스나 새 케이스의 경우는 지문 날인이 되어야 급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 7월 영주권 문호

3순위 전문직에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1일로 6월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1일로 지난 달에 비해서 4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폼접수일)가 2023년 5월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폼이 승인이 되면 I-140과 I-485 동시 접수가 아직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접수 가능일은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승인 가능일은 폼 접수일이 2022년 2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문호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월1일 새 회계년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숙련직의 경우는 6월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기준으로 2020년 2월1일이 접수 가능일이고 승인 가능일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020년 1월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 초청 영주권의 경우는 접수 가능일은 여전히 오픈 상태로 I-130(가족 초청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가 가능하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I-130 접수일(우선일자)이 2020년 9월8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났을 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유대인 장례

유대인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됐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배우며 유대인이란 말을 접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는 유대인과 어울려 살며 좀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알게 됐다.

그들은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만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타민족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며 다소 배타적이다. 그들은 모세가 썼다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산다. 독특하다. 그래서 타민족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고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여 온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떠돌이 민족이지만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회당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회당(시나고그)이 있다. 선민사상을 교육 시키고 성경 속의 말씀대로 자녀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기에 그들이 사는 곳은 학군이 좋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의 자녀 교육열성은 좋은 학군을 형성한 유대인 동네로 이사해 그들과 이웃하며 살게 한다. 분명히 공립학교인데도 유대인 명절에는 수업이 없다. 주중 저녁시간에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학교로 변한다. 토요일에는 온가족이 검은 정장을 입고 걸어다닌다. 저녁 시간 방에 불을 켜야 하는데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노동이 되어 옆집 사람에게 불을 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유대인의 장례를 소개하려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배경들을 나열하였다. 그들은 상을 당하면 가능한 빨리 매장을 한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묻기를 원하나 미국에서는 사망증명서와 매장허락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다음날에 매장을 하게 된다. 그들은 영혼이

떠난 시신을 오랫동안 이 세상에 두는 것이 불경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마지막날이 다가오면 묘지와 장례식은 준비를 해두고 기다린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사랑하는 임의 임종 시간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육신이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신 방부처리는 하지 않고 장례 예식 중에 관을 열지 않는다. 관은 철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나무관을 선택한다. 쇠붙이는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묘지에서 요구하는 곁관도 그들은 밑바닥이 없는 곁관을 사용한다. 바닥이 없어야 나무관도 세월 속에 썩어지고 시신도 함께 흙으로 돌아가기가 쉽다.

그들은 임종 후 매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지만 장례의 조문은 매장 후 쉬바라고 칭하는 칠일 동안 집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는다. 장례의 관습이 많이 있으나 그 중의 한 가지를 필자가 알게 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칠일의 쉬바 기간 동안 상주는 집에 있는데 조객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고 한다. 조객이 상가를 방문하여도 상주가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문객이 위로의 말을 포함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율기라는 책을 보면 율의 온 가족이 순식간에 죽어 큰 어려움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율의 집에 갔으나 율이 입을 떼기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사서 살든지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미국의 규제 한에서 지켜나가는 것을 그들의 장례를 보며 배운다.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